#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 안<br>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09년 1월 일
제 출 자 : 성주군수

## 1.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가 개정(대통령령 제20900호, 2008. 07. 03. 공포・시행)되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던 것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권과 탄력성을 확대하는 한편,

나. 지나치게 세분화 된 직급 구분으로 신규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여 총정원과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5급 이상)만 조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 53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27명
- 의회기관의 정원 : 12명

**나. 성주군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비율**

- 일반직 : 현행 80% 이상 → 변동없음
- 기능직・고용직 : 현행 18% 이내 → 조정 17% 이내(△1%)
- 별정직・정무직 : 현행 2% 이내 → 조정 3% 이내(증1%)

**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 일반직 비율

- 4급 이상 현행 1% 이내 → 현행과 같음
- 5급 현행 6% 이내 → 현행과 같음
- 6급 현행 27% 이내 → **조정 28% 이내(증 1%)**
- 7급 현행 31% 이내 → 현행과 같음
- 8급 현행 24% 이내 → **조정 23.5% 이내(△0.5%)**
- 9급 현행 11% 이상 → **조정 10.5% 이상(△0.5%)**

○ 기능직・연구직・지도직 비율 → 현행과 같음

○ 별정직 비율

- 5급 상당 현행 7% 이내 → 조정 3% 이내(△ 4%)
- 6급 상당 현행 50% 이내 → 조정 64% 이내(증14%)
- 7급 상당 현행 29% 이내 → 조정 27% 이내(△ 2%)
- 8급 상당 현행 12% 이내 → 조정 3% 이내(△ 9%)
- 9급 상당 현행 2% 이상 → 조정 3% 이상(증 1%)

**라. 별정·기능직 정원 조정**

○ 별정직(전체) : 현행 17명 → 조정 18명(증1)

- 의회사무과 별정6급1명(증1)

○ 기능직(전체) : 현행 74명 → 조정 73명(△1)

- 의회사무과 기능직 1명(△1)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기타

1) 개정 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09. 1. 5 ~ 1. 15(10일간)

나) 예고방법 : 성주군공보, 성주군홈페이지, 군·읍면게시판

다) 예고결과 : 별첨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성주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39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2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등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등 정원 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구분 | 일반직 | 기능직·고용직 | 별정직·정무직 |
|---|---|---|---|
| 비율 | 80% 이상 | 17% 이내 | 3% 이내 |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 구 분 | 4급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비 율 | 1% 이내 | 6% 이내 | 28% 이내 | 31% 이내 | 23.5% 이내 | 10.5% 이상 |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 공무원

| 구분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
| 비율 | 3% 이내 | 9% 이내 | 16% 이내 | 32% 이내 | 40% 이상 |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 구분 | 연 구 직 | | 지 도 직 | |
|---|---|---|---|---|
|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 비율 | 3% 이내 | 97% 이상 | 8% 이내 | 92% 이상 |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 구분 | 5급상당이상 | 6급 상당 | 7급 상당 | 8급 상당 | 9급 상당 |
|---|---|---|---|---|---|
| 비율 | 3% 이내 | 64% 이내 | 27% 이내 | 3% 이내 | 3 % 이상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3】

# 성주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관련)

| 기관별 /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
| 총계 | 539 | 263 | 12 | 96 | 14 | 154 |
| 정무직계 | 1 | 1 | | | | |
| 군수 | 1 | 1 | | | | |
| 일반직계 | 417 | 220 | 7 | 48 | 8 | 134 |
| 4급 | 1 | 1 | | | | |
| 4~5급 | 3 | 2 | | 1 | | |
| 5급 | 25 | 11 | 3 | 0 | 1 | 10 |
| 6급상당 이하 계 | 388 | 206 | 4 | 47 | 7 | 124 |
| 별정직 계 | 18 | 2 | 1 | 12 | 3 | 0 |
| 6급상당 이하 계 | 18 | 2 | 1 | 12 | 3 | |
| 연구사 계 | 2 | 2 | 0 | 0 | 0 | 0 |
| 학예연구사 | 1 | 1 | | | | |
| 임업연구사 | 1 | 1 | | | | |
| 지도직 계 | 28 | 0 | 0 | 28 | 0 | 0 |
| 지도관 | 3 | | | 3 | | |
| 지도사 | 25 | | | 25 | | |
| 기능직 계 | 73 | 38 | 4 | 8 | 3 | 20 |